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투찰업체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유림2동 마을공동시설(농기계 창고) 설치 공사
-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93번지 일원
-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 라. 공사개요 : 농기계 창고 신축
-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바.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51,698,000	141,938,000	129,034,546	12,903,454	9,76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제13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는 관련 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462,714	192,200	1,932,654	935,811	2,765,739	7,289,118

※ 환경보전비는 위 합계값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설계서 반영금액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 후 사후 정산합니다.

-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1(화) 14:00 ~ 2026. 8. 18(화) 14: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개찰일시 : **2026. 8. 18(화) 15:00** 유림2동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에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제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미열람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처인구 유림2동 행정민원팀 (☎031-6193-5733)**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급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등록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은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9-5호)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등의 합산액: 7,289,118원

※ 환경보전비 432,299원은 관련 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수의계약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 시 해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 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과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회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계약에 관한 사항 : 유림2동 행정민원팀 (☎031-6193-5733)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유림2동 행정민원팀 (☎031-6193-573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차.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

용인시 처인구 유림2동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 처인구 유림2동 재무관 귀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약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유림2동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연락처	주소	[] 단체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한
도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